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4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임미애 · 김용민 · 최기상
윤건영 · 오세희 · 박해철
정진욱 · 김문수 · 송재봉
이용우 · 박희승 · 이재관
조인철 · 최민희 · 양부남
박지혜 · 백승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이 판매된 상품을 제공한 납품업자등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의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상품의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납품업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상품의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③ 대규모유통업자가 <u>제1항 및 제2항</u>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p>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 ----- ----- -----<u>10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7일</u>----- ----- -----.</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신선농·수·축산물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p>

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를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이 판매된 상품을 제공한 납품업자등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의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상품의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납품업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의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상품의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상품의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